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15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김남근 · 송재봉 · 민병덕
강준현 · 이용우 · 박 정
김문수 · 이훈기 · 정진욱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 · 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

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공사를”을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를 “제4호까지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호까지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

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생략)

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
다. -----

⑥ (현행과 같음)